

# 포상규정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축구협회(이하 '협회'라 한다)가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(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.

## 제3조 (종류)

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### 1. 표창

협회 임직원 또는 회원단체( 시도협회, 연맹단체, 등록팀) 및 그 회원, 심판, 감독관 등 협회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업무 수행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하는 상

### 2. 공로상

협회 직원이 아닌 자로서 축구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

### 3. 감사상

표창 및 공로상 대상이 아닌 자로서 축구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

### 4. 대회상

경기와 관련하여 경기 주최(주관) 단체 또는 협회가 주는 상

#### 가. 단체상

- 1) 우승
- 2) 준우승
- 3) 3위
- 4) 페어플레이상

#### 나. 개인상

- 1) 최우수 선수상
- 2) 우수 선수상
- 3) 최다 득점상

- 4) 수비상
- 5) 골키퍼상
- 6) 도움상
- 7) 지도자상
- 8) 심판상

다. 그외 필요에 의해 별도로 주는 상

5. 명예의 전당 헌액 :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별도 규정에 의해 주는 상.

6. 기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상.

#### 제4조 (심의 기구)

포상의 심의는 다음의 대상에 따라 각각 심의 기구를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① 일반적인 포상은 포상위원회가 심의한다.
- ② 협회, 시·도협회 및 연맹단체 직원에 대한 포상은 협회 및 해당 기관의 처무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가 본 포상 규정에 준하여 심의한다.
- ③ 대회상은 경기 주최(주관) 단체가 심의한다.
- ④ 명예의 전당 헌액은 별도 규정에 의해 특별 기구를 만들어 심의한다.
- ⑤ 재심은 협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 포상 재심위원회가 심의하고, 심의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. 단, 포상 재심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안을 다룬 포상위원회 위원과 달라야 한다.

#### 제5조 (포상위원회의 구성)

- ① 포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비상설로 두며, 심의 안건 종결시 자동 해산된다.
-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- ③ 위원장은 협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
- ④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⑤ 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.

#### 제6조 (포상위원회 운영)

- ① 포상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.
- ② 포상위원회는 위촉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심의 대상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

서면(팩스, 이메일 포함) 또는 구두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에 개최되는 포상위원회의 주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포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조직(협회 사무처, 분과위원회, 시도 협회,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)과 관련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조직 및 관련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.

### 제7조 (시기)

① 포상시기는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

② 정기 포상은 매년 실시하며, 수시 포상은 필요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 실시한다.

### 제8조 (추천)

① 협회는 필요시 협회 임직원, 회원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 별지 1 <포상추천서> 양식에 의해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추천은 포상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협회 사무처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, 해당 포상 심의기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대회상은 대회 주최(주관) 기관이 시상하고 협회에 보고한다. 단, 협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이후라도 그 시상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9조 (심의 및 확정)

포상은 제4조에 명시된 기구에서 심의하고, 이사회가 주인 또는 확정한다.

### 제10조 (통보)

포상이 확정된 후 협회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2 <포상통보서> 양식에 의해 해당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한다.

### 제11조 (부상)

포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장, 트로피 등과 별개로 부상(副賞)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### 제12조 (대리 수상)

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13조 (재심)

시행한 포상에 대해 포상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에 의해 포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이 청구되거나,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할 수 있다.

### 제14조 (기록 관리)

협회 사무처는 포상 결과를 수록한 포상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### 제15조 (시·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포상)

- ① 시·도협회는 자체 행정 관할 구역내에서 포상할 수 있고, 연맹단체는 소속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즉시 별지 3 <포상 보고서> 양식에 의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각 단체의 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협회는 해당 포상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직접 관여할 수 있다. 재심의 요구와 직접 관여는 해당 심의 기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시·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포상은 본 규정에 준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- ④ 협회는 회원단체의 포상규정을 심의하고 인준한다.

## 부 칙

### 제1조 (명시되지 않은 사항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(FIFA), 아시아축구연맹(AFC) 및 대한체육회 상벌규정 및 각종 대회규정을 준용한다. 위의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위원회 또는 해당 포상 심의기구의 결정에 의한다.

### 제2조 (시행)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 협회 이사회 승인후 시행한다.

별지 1



# 포 상 추 천 서

부 문		1. 공로상( ) 2. 표창( ) 3. 감사상( ) 4. 기타( )
피추천자 인적사항	소속	
	직위	
	이름	
추천 사유		
<p>위 사람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추천인 이 름 :</p> <p>소 속 :</p> <p>직 위 :</p> <p>연락처 :</p> <p>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</p>		

별지 2



# 포 상 통 보 서

이 름		소 속	
직 위		주민등록번호	
포상명		포상 근거	포상 규정 제 조 항
포상 일시, 장소			
포상 사유			
<p>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포상을 통보합니다</p> <p>년 월 일</p> <p>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</p>			

별지 3



# 포 상 보 고 서

번호	이름	소속	직위	포상명	포상일	포상 사유

위의 사람(단체)을 포상하였기에 보고합니다

년 월 일

단체명 : 인

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